

[별표 2] <개정 2026.8.13.>

신용정보업, 본인신용정보관리업, 채권추심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에 필요한
정보처리·정보통신설비 요건(제6조 및 제26조의4제1항 관련)

1. 개인신용평가업,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, 기업신용조회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

구분	세부 요건
시스템 구성	1. 시스템 구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할 것 가. D/B서버, 통신서버, 보안서버 등 통신구간 암호화 시스템 나. WEB서버(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한함) 다. 저장장치 라. 그 밖에 주변장치 2. 백업 및 복구시스템 3. 시스템 보안 및 시설 보안을 포함한 보안관리 체계
시스템 성능	1. 보유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2. 온라인서비스 또는 공중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적절하 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3. 백업 및 복구작업이 최소한의 시간내에 가능할 것
보안체계	1. 방화벽(Fire-Wall)을 갖출 것 2. 침입을 탐지·경고·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갖출 것 3. 내부네트워크와 신용조회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운용할 것 4. 정보이용자 확인 체계(사용자 인증)를 갖출 것 5. 데이터 암호화처리 체계를 갖출 것 6. 외부침입 방지, 출입자관리 통제 및 데이터 반출·반입 통제에 대한 대책 을 강구할 것 7. 백업 및 소산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
운용능력	1. 시스템 운용능력을 갖출 것 2.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갖출 것

2. 본인신용정보관리업

구성	세부 요건
시스템 구성	1. 시스템 구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할 것 가. DB서버, 통신서버, 웹서버, 보안서버 등 서버 시스템 나. 저장장치, 단말기 등 기타 주변장치 다. 해당업무 영위를 위한 각종 S/W 프로그램 2. 백업 및 복구시스템을 갖출 것 3. 내외부 네트워크 등 통신시스템 구성 등을 갖출 것
보안체계	1. 침입차단시스템, 침입탐지시스템,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프로그램,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탐지 및 백신프로그램을 갖출 것 2.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·서비스의 이용 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3. 직무분리 기준을 수립할 것 4.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마련할 것 5. 비상계획, 재해복구 훈련 실시 체계를 갖출 것 6. 서버, 단말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 7.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마련할 것 8. 주요 데이터에 대한 접속기록 유지할 것 9.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(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하고,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같은 규정 제14조의2 제1항·제2항·제7항을 준용한다.) 10. 안전한 물리적 보안설비(통신회선 이중화, CCTV 등)를 갖출 것 11. 안전한 백업대책을 갖출 것 12. 안전한 데이터 암호화 처리방침 및 암호처리 시스템 구축 할 것 13. 외부에서 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접속 및 인증수단(VPN 등)을 적용할 것

3.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

허가받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메모리, 중앙처리장치, 디스크 용량 등을 갖춘 전산기기를 보유하고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할 것